

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시행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정별 학과 및 전공)

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.<개정 2011. 7. 5.>

1. 신학과

가. 구약학 나. 신약학 다. 교회사 라. 조직신학
마. 기독교윤리학 바. 실천신학 사. 선교신학 아. 기독교교육학

2. 교회음악학과 <신설 2011. 7. 5.>

가. 오르간 나. 성악 다. 작곡 라. 지휘 마. 피아노

3. 사회복지학과 <신설 2011. 7. 5.>

가. 사회복지실천 나. 사회복지정책

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.<개정 2011. 7. 5.>

1. 신학과

가. 구약학 나. 신약학 다. 교회사 라. 조직신학
마. 기독교윤리학 바. 실천신학 사. 선교신학 아. 기독교교육학

2. 교회음악학과 <개정 2009. 3. 27., 2014. 10. 10.>

가. 오르간 나. 성악 다. 작곡 라. 지휘 마. 피아노 바. 반주전공

3. 기독교교육학과 : 기독교교육학

4. 사회복지학과 <개정 2009. 3. 27., 2011. 7. 5.>

가. 사회복지실천 나. 사회복지정책

5. 보육학과 : 보육학

6. 유아교육학과 : 유아교육학 <신설 2011. 7. 5.>

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(논문영역)을 둔다.

1. 신학대학원 신학과

2.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

3. 상담대학원 상담학과 <개정 2011. 7. 5.>

가. 목회/기독교상담

나. 가족치료 <개정 2012. 2. 9.>

다. 아동/청소년상담

4. 설교대학원 신학과 <개정 2016. 4. 6.>

④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.

1.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 <개정 2011. 7. 5.>

가. 구약신학 나. 신약신학 다. 교회사

라. 조직신학 마. 기독교윤리학 바. 실천신학

사. 선교신학 아. 상담심리학

⑤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를 둔다. <개정 2011. 7. 5.>

1.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

가. 성서신학 나. 이론신학 다. 실천신학

2. 신학전문대학원 선교학과

가. 선교신학

제3조 (전공의 변경) 전공을 변경하려면 같은 학과 내에서 가능하며 제2차 학기 초 30일 이내에 해당 전공분야의 주임교수를 경유하며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 단, 신학전문대학원의 전과는 허락할 수 있다.

제 2 장 입학, 편입학, 재입학

제4조 (입학자격) 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. 단, 세부 입학자격 및 전형은 당해 연도 입시요강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(Ph.D.) <개정 2011. 7. 5.>

1. 신학과

가. 신학·기독교교육 전공자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수 2인의 추천을 받은 자<개정 2008. 10. 1., 2014. 10. 10.>

나. 신학 전공 : 신학석사 학위 소지자로 신학 수업연한이 8학기 이상인 자<개정 2014. 12. 27.>

(1) 삭제<개정 2008. 10. 1., 2014. 12. 27.>

(2) 삭제<개정 2014. 12. 27.>

(3) 삭제<개정 2009. 9. 7., 2010. 10. 19., 2010. 12. 3., 2014. 10. 10., 2014. 12. 27.>

(4) 삭제 <개정 2008. 10. 1., 2009. 9. 7., 2014. 12. 27.>

(5) 삭제 <신설 2010. 10. 19., 개정 2014. 10. 10., 2014. 12. 27.>

(6) 삭제 <신설 2012. 4. 13., 개정 2014. 10. 10., 2014. 12. 27.>

다. 기독교교육학 전공

(1) 기독교교육 전공의 석사학위(M.A.) 취득(예정)자 <개정 2014. 12. 27.>

(2) M.Div. 학위소지자로서 기독교교육 전공의 석사(Th.M.) 학위 취득(예정)자 <개정 2014. 12. 27.>

(3) 학부 기독교교육 전공자로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(예정)자 <개정 2009. 9. 7., 2010. 10. 19., 2010. 12. 3., 2014. 12. 27.>

(4) 삭제 <개정 2008. 10. 1., 2009. 9. 7., 2014. 12. 27.>

2. 교회음악학과(D.M.A.) <신설 2011. 7. 5.>

가.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음악석사학위 취득(예정) 자

3. 사회복지학과(Ph. D.) <신설 2011. 7. 5.>

가.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(예정) 자

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

1. 신학과 : 신학석사(Th.M.)<개정 2014. 12. 27.>
 - (1) 신학 및 기독교교육학(M.A.)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 - (2)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한 자
2. 신학과 : 신학석사(M.A.)
신학학사학위취득(예정)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<개정 2008. 10. 1.>
3. 교회음악학과 : 음악학석사(M.A.C.M.)
음악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음악을 전공한 자
4. 기독교교육학과 : 문학석사(M.A.)
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
5. 사회복지학과 : 문학석사(M.A.)
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
6. 보육학과 : 문학석사(M.A.)
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
7. 유아교육학과 : 문학석사(M.A.) <신설 2011. 7. 5.>
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

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

1. 신학대학원 신학과

가. 일반전형

- ㄱ. 입교 후 만 2년 이상된 세례자로 소속 지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(타교단 소속 지원자는 해당 교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)
- ㄴ. 위 '1'항에 해당하는 자로서
 - (1) M.Div. I 과정 :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목회 사역에 소명이 있는 자
 - (2) M.Div. II 과정 : 신학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목회 사역에 소명이 있는 자
 - (3) M. Div. III 과정(야간) :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목회 사역에 소명이 있는 자<개정 2014. 10. 10.>

나. 특별전형

ㄱ. 공통사항

- (1) 입교 후 2년 이상된 세례자로서 담임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<개정 2008. 10. 1., 2014. 10. 10.>
- (2) 국내·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또는 예정자

ㄴ. 해당사항(※각호 1에 해당하는 자)

- (1) 박사학위소지자 : 국·내외 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(단, 명예박사 및 비 학문성 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함)
- (2) 공무원 경력자 : 국가·지방공무원 5급이상, 판사 및 검사, 대사 및 영사, 공공단체 및 정부 산하 기관의 임원

- (3) 준장교 : 소령 이상<개정 2008. 10. 1.>
 - (4) 사회 저명인사 : 변호사, 의사, 한의사, 약사, 언론기관 임원, 상장회사 임원, 법인사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<개정 2008. 10. 1.>
 - (5) 40세 이상된 자로서, 교회 안수집사, 권사, 장로 직분을 받은 자<개정 2008. 10. 1., 2014. 10. 10., 2014. 12. 27.>
 - (6) 교육 경력 또는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재직한 자<개정 2014. 12. 27.>
 - (7) 공익사업 또는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크게 공헌하여 관계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<개정 2014. 12. 27.>
 - (8) 본교 신학전문대학원(M.A.) 졸업(예정)자
 - (9) 대학에서 2년이상(4학기) 강의 경력이 있는 자<개정 2014. 12. 27.>
 - (10)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인정하는 전임 선교사로 현지에서 봉사한 자 <신설 2008. 10. 1.><개정 2014. 12. 27.>
 - (11)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, 기독교 관련단체 및 NGO단체에 재직한 자<신설 2008. 10. 1.><개정 2014. 12. 27.>
 - (12) 외국 시민권자로서 4년제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<신설 2008. 10. 1.>
 - (13) 농어촌목회지망생:7년이상 농어촌에서 목회할 자<신설 2014. 10. 10.>
 - (14) 예체능 전공학위취득(예정)자로서 목회에 사명이 있는 자<신설 2014. 10. 10.>
 - (15) 은퇴자 전형:은퇴(은퇴예정) 후 신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<신설 2014. 10. 10.>
 - (16) 탈북자 중 목회자의 사명이 뚜렷한 자<신설 2014. 10. 10.>
 ※(삭제) <개정 2014. 10. 10.>
2.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<개정 2011. 12. 26.>
- 가.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(독학사 포함)를 취득(예정) 한 자
 - 나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※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
- [전문개정 2008. 10. 1.]
3. 상담대학원
- 가. 상담학과(M.A.C.) :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목회자와 기독교인으로서 전문상담가가 되고자 하는 자<개정 2012. 5.21.>
 - 나. 상담학과(Th.M.) : 신학석사(Th.M., M.A., M.Div.) 학위 취득(예정) 또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목회자와 기독교인으로서 전문상담가가 되고자 하는 자 <개정 2008. 10. 1., 2012. 5.21.>
4. 설교대학원(Th.M., M.A.)
- 가. 학부 신학과 졸업(예정)자

나. 신학석사학위(Th.M., M.A., M.Div.) 소지자

다. 기타 신학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<개정 2016. 4. 6>

④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(Th.D.)

1. 일반전형: 가. 신학석사학위(M.A., M.Div. 또는 동등학력) 소지자로서 신학석사학위(Th.M.) 취득(예정)자 <개정 2010. 10. 26.>

나. 신학석사학위(M.A., M.Div 또는 동등학위 소지자) 가진 자로서 상담학석사(Th.M. in Counseling)를 취득한 자로 실천신학을 전공할 자

다. 신학석사학위(M.A., M.Div. 또는 동등학력) 소지(예정)자로서 대학원성적 4.0이상인 자 <신설 2010. 10. 26., 개정 2011. 8. 17., 2014. 10. 10.>

라. 석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(예정)자로서 상담심리학을 전공 할 자 <신설 2010. 10. 26., 개정 2011. 8. 17.>

2. 특별전형: 신학석사(Th.M., M.A., M.Div.) 또는 상담학석사 학위소지자 중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 <개정 2011. 8. 17.>

가. 학계와 교계, 사회에 큰 기여와 공로가 있는 자

나. 목회경력 15년 이상 또는 선교사 10년 이상 경력자<개정 2014. 10. 10.>

다. 전문상담사 10년 이상 경력자<개정 2014. 10. 10.>

⑤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<개정 2014. 10. 10.>

1. 일반전형

가. 신학과 : 신학석사(Th.M.)

신학전공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

나. 신학과 : 신학석사(M.A.)

신학전공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

다. 신학과 : 신학석사(M.T.S.)

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

라. 선교학과 : 신학석사(Th.M.)

신학석사학위(M.A., M.Div.) 소지자로서 선교사역에 소명이 있는 자

마. 선교학과 : 신학석사(M.A.)

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선교사역에 소명이 있는 자

2. 특별전형

가. 신학과 : 신학석사(M.A.)

평생(미래,사회)교육원에서 신학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
나. 신학과 : 신학석사(M.T.S)

평생(미래,사회)교육원에서 신학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
다. 선교학과 : 신학석사(M.A.)

평생(미래,사회)교육원에서 신학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
제5조 (입학지원서류)

① 대학원 박사과정

1. 신학과

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
- 나.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부
 - 다. 이력서(소정양식) 1부
 - 라. 삭제 <개정 2014. 10. 10.>
 - 마. 대학(원) 교수(2인) 추천서(소정양식) 각1부<개정 2014. 10. 10., 2014. 12. 27.>
2. 교회음악학과 <신설 2011. 7. 5.>
- 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 - 나.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- 다. 이력서(소정양식) 1부
 - 라. 대학(원) 교수(2인) 추천서(소정양식) 각1부<개정 2014. 10. 10., 2014. 12. 27.>
3. 사회복지학과 <신설 2011. 7. 5.>
- 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.
 - 나.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- 다. 이력서(소정양식) 1부
 - 라. 연구계획서(소정양식) 각1부
 - 마. 대학(원) 교수(2인) 추천서(소정양식) 각1부<개정 2014. 12. 27.>
- ② 대학원 석사과정
- 1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 - 2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- 3. Th.M.과정은 교수 추천서<개정 2014. 10. 10.>
 - 4. Th.M.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- 5. 사회복지학과(M.A.과정)은 수학계획서 1부
-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
- 1. 신학대학원
 - 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 - 나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부
 - 다. 담임교역자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 - 라. 삭제<개정 2014. 10. 10.>
 - 마. 신앙간증서(소정양식) 1부
 - 바. 삭제<개정 2014. 10. 10.>
 - 사. 삭제<개정 2014. 10. 10.>
 - 2. 사회복지대학원
 - 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 - 나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- 다. 삭제<개정 2014. 10. 10.>
 - 라. 경력 및 재직증명서(법인 및 유관기관 재직자에 한함) 1부<개정 2008. 10. 1.>
 - 3. 상담대학원

- 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- 나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- 다. Th.M과정은 대학원(M.A. 또는 M.Div.)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- 라. 인성검사(소정양식) 1부
- 마. 경력증명서<개정 2008. 10. 1.> 1부
- 4. 설교대학원
 - 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 - 나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- 다. 대학원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(해당자) 각1부
 - 라. 소속교단 재직증명서 1부 <개정 2016. 4. 6.>
- ④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<개정 2011. 8. 17>
 - 1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 - 2. 대학 및 대학원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- 3. 이력서(소정양식) 1부
 - 4. 추천서(최종출신학교 교수, 담임교역자) 각 1부<개정 2014. 10. 10.>
 - 5. 경력증명서(교단장 또는 관련기관장 발행) 1부
 - 6. 삭제<개정 2014. 10. 10.>
 - 7. 삭제<개정 2014. 10. 10.>
- 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<개정 2011. 8. 17.>
 - 1. 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
 - 2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- 3. 소속교단 재직증명서 1부
 - 4. 삭제<개정 2014. 10. 10.>
 - 5. 삭제<개정 2014. 10. 10.>
 - 6. Th.M.과정은 대학원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부
 - 7. 담임교역자추천서 (소정양식) 1부

제6조 (입학전형)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고사를 시행한다.

- ① 대학원 박사과정
 - 1. 신학과 입학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.

전공과목	100점
구술시험	100점
서류심사(대학원성적)	100점
영 어	100점
삭 제<개정 2009. 9. 7., 2014. 10. 10.>	
 - 2. 교회음악학과 입학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. <신설 2011. 7. 5.>

전공실기	200점
------	------

 단, 전임교원이상 직위를 가진 지원자는 전공실기를 연구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.

구술시험	100점
------	------

- 서류심사(대학원성적) 100점
3. 사회복지학과 입학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. <신설 2011. 7. 5.>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|
| 전공과목 | 100점 |
| 구술시험 | 100점 |
| 서류심사(대학원성적) | 100점 |
4. 어학시험과목은 영어로 하며, 합격점수는 70점이상(TOEFL성적 CBT 213점, IBT 80점 또는 TEPS 651점 이상 면제-성적인정유효기간 2년)으로 한다. <개정 2008. 10. 1., 2014. 10. 10.>
5. 구술시험 <개정 2008. 10. 1.>
6. 각 과목별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임 <개정 2008. 10. 1.>
- ② 대학원 석사과정
1. 신학과(Th.M.)
- | | |
|-------|------|
| 대학원성적 | 30점 |
| 대학성적 | 20점 |
| 구술시험 | 100점 |
2. 신학과(M.A.), 기독교교육학과(M.A.)
- | | |
|------|------|
| 대학성적 | 50점 |
| 구술시험 | 100점 |
3. 교회음악학과(M.A.C.M.)
- | | |
|------|------|
| 전공실기 | 100점 |
| 대학성적 | 50점 |
| 구술시험 | |
- * 각 분야별, 전공실기 과제는 입학요강에 명시한다.
* M.A.C.M.과정 전공실기 50점미만은 과락임.
4. 사회복지학과(M.A.)
- | | |
|------|------|
| 대학성적 | 50점 |
| 구술시험 | 100점 |
5. 보육학과(M.A.)
- | | |
|------|------|
| 대학성적 | 50점 |
| 구술시험 | 100점 |
6. 유아교육학과(M.A.) <신설 2011. 7. 5.>
- | | |
|------|------|
| 대학성적 | 50점 |
| 구술시험 | 100점 |
- ③ 특수대학원
1. 신학대학원
- 가. 일반전형(M.Div I, II)<개정 2014. 10. 10.>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필기시험(영어, 구약, 신약, 논술) | 400점 |
| 대학성적 | 50점 |
| 서류심사 | |

구술시험	50점
나. 일반전형(야간M.DivⅢ, 특별)<신설 2014. 10. 10.>	
대학 및 대학원 성적	100점
구술시험	100점
담임교역자 추천서	50점
자기소개서	50점
2. 사회복지대학원	
대학성적	50점
구술시험	100점
* 사회복지기관이나 유관기관 근무경력자에게 가산점 부여	
3. 상담대학원	
대학성적 및 대학원성적	50점
구술시험	50점<개정 2008. 10. 1.>
심리검사(MMPI)	
4. 설교대학원	
대학 및 대학원성적	50점
구술시험	100점<개정 2016. 4. 6.>
④ 전문대학원 <개정 2011. 7. 5.>	
1.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	
서류심사	
구술시험	100점
대학원성적	50점
2. 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	
대학 및 대학원성적	50점<개정 2008. 10. 1.>
구술시험	100점

제7조 (편입학) 삭제<2008. 7. 21>

제8조 (공개강좌) ① 공개강좌는 현장 전문화, 교양, 연구, 목회와 신학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공개강좌의 과목, 기간, 인원, 장소,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사전에 발표한다.

③ 공개강좌를 이수한자에게는 이를 증명하고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④ 공개강좌에 대하여 강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.

제9조 (연구과정) ① 연구과정 입학생의 자격은 학칙 제7조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.

② 연구과정 입학생의 매학기 수강과목은 3과목 이내로 하며,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③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.

제10조 (재입학) 삭제<2008. 7. 21>

제11조 (재입학생 학점인정) 삭제<2008. 7. 21>

제12조 (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삭제<2008. 7. 21>

제 3 장 수업연한, 교과과정, 학점.

제13조 (수업연한)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대학원 박사과정 : 3년
- ② 대학원 석사과정 : 2년
-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
 1. 신학대학원 : 3년
 2. 사회복지대학원 : 2년
 3. 상담대학원 : 2년 6개월
 4. 설교대학원 : 2년
- ④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: 3년
- 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: 2년
- ⑥ 모든 학적변동은 수업연한 내에서만 할 수 있다.
- ⑦ 대학원 학생 중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인정 받을 경우 석사과정은 최대 15-18학점(2학기)<개정 2016. 4. 6>,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(2학기)이내에 한하여 등록학기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2. 27.>
- ⑧ 신학대학원 학생 중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신학과목을 학점인정 받을 경우 15학점이상은 1학기, 30학점이상은 최대 2학기이내에 한하여 등록학기를 면제할 수 있다.
 1. 1학기 면제(15학점~18학점인정)
 2. 2학기 면제(30학점~36학점인정)
- ⑨ 사회복지대학원, 상담대학원 학생 중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9학점을 학점인정 받을 경우 1학기 등록을 면제한다. <개정 2010. 1. 15.>
- ⑩ 신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인정 받을 경우 석사과정은 최대 15-18학점(2학기)<개정 2016. 4. 6>,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(2학기)이내에 한하여 등록학기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2. 27.>
- ⑪ 설교대학원 학생 중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인정 받을 경우 최대 15학점 2학기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6. 4. 6>

제14조 (재학연한)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대학원 박사과정 : 7년
- ② 대학원 석사과정 : 4년
-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
 1. 신학대학원 : 5년
 2. 사회복지대학원 : 4년
 3. 상담대학원 : 4년 6개월
 4. 설교대학원 : 4년
- ④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: 8년

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: 5년

제15조 (교과과정)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6조 (이수학점) 각 대학원의 과정별 이수학점의 산정은 학칙 제2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.

① 대학원 박사과정

1. 신학과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6학점을 포함하여 37학점으로 한다.<개정 2014. 12. 27.>

전 공	21학점
선 택	9학점
논 문	6학점
논문작성지도	1학점
계	37학점

※ 단, 한 학기에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.

나. <삭제 2016. 4. 6)

2. 교회음악학과 <신설 2011. 7. 5., 개정 2011. 12. 16., 2014. 12. 27.>

가. 이수학점은 논문6학점을 포함하여 37학점으로 한다.

전 공	18학점
선 택	15학점
논 문	3학점
논문작성지도	1학점
계	37학점

※ 단, 한 학기에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.

3. 사회복지학과 <신설 2011. 7. 5.>

가. 이수학점은 논문6학점을 포함하여 42학점으로 한다.

전 공	36학점
논 문	6학점
<hr/>	
계	42학점

※ 단, 한 학기에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.

나.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아니 한 자는 보충과목으로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또는 사회복지대학원에서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(신설 2016. 1. 20)

② 대학원 석사과정

1. 신학과(Th.M., M.A.)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3학점을 포함하여 28학점으로 한다.<개정 2014. 12. 27.>

전 공	18학점
선 택	6학점

논 문	3학점
논문작성지도	1학점
계	28학점

※단, 한 학기에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.

- 나. 졸업시까지 전공에서 9학점(3과목)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 다. 기독교교육전공자는 보충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한다(기독교교육개론포함)
2. 기독교교육학과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3학점을 포함하여 28학점으로 한다.<개정 2014. 12. 27.>

전공과목	18학점
신 학	6학점
논 문	3학점
논문작성지도	1학점
계	28학점

나. 기독교교육학과 입학자중 학부에서 기독교교육전공을 아니한 자는 다음과 같이 전공과목의 보충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1) 신학관련 학부출신 : 6학점
- 2) 일반교육과 출신 : 9학점
- 3) 기타 일반학과 학부출신 : 12학점

3. 교회음악학과 <개정 2011. 7. 5.>

가. 이수학점은 졸업연주 3학점을 포함하여 27학점으로 한다.<개정 2014. 12. 27.>

전 공	6학점
선 택	18학점
졸업연주	3학점
계	27학점

단, 한 학기에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.

나. 전공실기 학점은 3차학기까지 매 학기 2학점씩 6학점으로 하고 실기전공자가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전공3학점으로 산정한다. <개정 2011. 7. 5.>

다. 타 대학 졸업생의 경우 신학과목 2과목과 전공과목의 보충 과목1과목(찬송가학, 교회음악입문, 예전음악 중 택일)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타 대학 교회음악 전공일 경우는 당 대학에서의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4. 사회복지학과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3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으로 한다.

전 공	27학점
논 문	3학점
계	30학점

나.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보충과목 6과목(사회복지사 국가시험 필수과목 :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행정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)을 이수하여야 한다.

5. 보육학과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3학점을 포함하여 28학점으로 한다.<개정 2014. 12. 27.>

전 공	24학점
논 문	3학점
논문작성지도	1학점
계	28학점

나. 보육학과를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보충과목 3과목(보육과정, 유아교육사상사,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또는 영유아발달 중 택1)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31.>

6. 유아교육학과 <신설 2011. 7. 5., 개정 2014. 12. 27.>

가. 이수학점은 논문3학점으로 포함하여 28학점으로 한다.

전 공	24학점
논 문	3학점
논문작성지도	1학점
계	28학점

나.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보충과목(3과목-유아교육개론, 영아발달, 유아교사론)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

1. 신학대학원 신학과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6학점을 포함하여 92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11. 2. 25., 2012. 3. 2., 2014. 3. 2)>

M.Div I)	필 수	63학점
	교 책	8학점
	선 택	15학점
	논 문	6학점
	계	92학점

M.Div II)	필 수	49학점
	교 책	8학점
	선 택	29학점
	논 문	6학점
	계	92학점

나. 필수과목의 내역은 별도로 정한다.

다. 논문대신 2과목이상(6학점) 학과목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2. 27.>

라. 삭제(대학원 설치목적에 따른 커리큘럼 구분의 필요<신설 2011. 2. 25.><개정 2014. 12. 27.>

2.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6학점을 포함하여 33학점으로 한다.

전공	27학점
논문	6학점(논문3+논문연구3)

계 33학점

나. 논문대신 2과목(6학점) 학과목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3. 상담대학원 상담학과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6학점을 포함하여 37학점으로 한다.

전공필수	13학점 <개정 2010. 12. 8., 2012. 4. 26., 2014. 10. 22.>
공통필수	9학점 <개정 2009. 9. 9., 2012. 4. 26.>
전공선택	9학점 <개정 2009. 9. 9., 2010. 12. 8., 2012. 4. 26.>
논문	6학점

계 37학점

나. 논문대신 2과목(6학점) 학과목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.<개정 2010. 12. 3.>

다. Th.M.과정 학생은 신학과목 2과목(6학점)을 선수보충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.

라. 상담학원서강독(3학점)은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<신설 2010. 12. 3.>

마. 학부 또는 Th.M., M.A., M.Div. 과정에서 공통필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전공선택(9학점)을 이수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 4. 26.>

4. 설교대학원 신학과

프로젝트(3학점) 포함하여 33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16. 4. 6>

④ 전문대학원 박사과정

1.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<개정 2014. 12. 27.>

가. 이수학점은 논문 6학점을 포함하여 37학점으로 한다.

전공	21학점
선택	9학점
논문	6학점

논문작성지도 1학점

계 37학점

나. 학사와 석사과정을 합해 신학수업 연한이 12학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9-18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2. 27.>

다. 삭제<개정 2014. 12. 27.>

라. 삭제<개정 2014. 12. 27.>

마. 상담심리학전공자로서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성서신학, 조직신학, 실천신학에서 각 1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<신설 2011. 12. 26><개정 2016. 4. 6.>

바. 상담심리학전공자로서 상담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보충과목 6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한다.<신설 2011. 12. 26.><개정2014. 12.27>

1) 상담의 이론과 실제

2) 목회(기독교) 상담개론

3) 가족치료

4) 아동청소년 상담개론

5) 정신분석학

6) 발달심리학

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<개정 2014. 12. 27.>

1.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, 선교학과(Th.M.)

가. 이수학점은 프로젝트 3학점을 포함하여 27학점으로 한다.

전공과목 18학점 <개정 2009. 8.24.>

선택과목(프로젝트포함) 9학점

삭제<개정 2009. 8.24.>

삭제

계 27학점

* 해외선교사의 경우는 전공과목 12학점, 선택과목(프로젝트포함) 12학점, 선교와현장 3학점/ 계 27학점

2.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, 선교학과(M.A.)

가. 이수학점은 프로젝트 3학점을 포함하여 27학점으로 한다.

전공과목 15학점

선택과목 12학점(프로젝트 포함)

삭제

계 27학점

* 해외선교사의 경우는 전공과목 12학점, 선택과목(프로젝트포함) 9학점, 선교와현장(I,II) 6학점 / 계 27학점 <신설 2009. 8. 24>

나. 삭제

다.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선택과목으로 신학 기초과목 3과목(9학점)을 첫 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17.>

제17조 (개설과목) 각 대학원의 과정 및 학부별 개설과목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8조 (학과목의 개설) 각 전공분야의 주임교수는 개강 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학기 “학과목개설신청서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 (개설과목수) 각 전공분야에서 매학기 2과목 이상 5개 과목 이내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20조 (수강생의 수) 개설되는 과목의 수강생의 최소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하되, 6명 이하의 수로 부득이 개설해야 할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과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수강생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0. 26., 2014. 12. 27.>

제21조 (보충과목)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 학위 수여규정에서 정한 정규학점 이외에 각 과정별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① 학사학위 과정의 전공과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(예, 일반음악-교회음악학, 일반교육학 - 기독교교육학)
- ② 입학전형에서 보충과목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자(이 경우에 필요한 과목 또는 분야에서 15학점 이내)

제22조 (학기당 취득학점) 각 대학원의 과정별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대학원 : 9학점
- ② 신학대학원 : 18학점
단, 6차 학기에 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사회복지대학원 : 9학점~12학점
단, 사회복지대학원의 경우 1년에 18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.
- ④ 상담대학원 : 10학점
- ⑤ 신학전문대학원 : 9학점
신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원장의 허가를 얻어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, 선수과목 및 보충과목은 추가로 취득 할 수 있다.
- ⑥ 한 학기에 타 대학원(학과)에서 1과목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한다. 총 4과목까지 가능하나 동일계열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<신설 2014. 10. 10.>
- ⑦ 설교대학원 : 9학점 <개정 2016. 4. 6.>

제23조 (수강신청) ① 학생은 등록금 납입 후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수강신청은 학교홈페이지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한다.
-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.
- ④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과목을 재이수 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이수할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. 이미 취득한 과목 중 “C”이하의 성적을 얻은 과목은 허락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에 이미 얻은 성적은 자동 취소되고 이 사실을 학적부 비고란에 기재한다.

-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⑥ 수강신청한 과목은 3/4이상 출석하여 수강하지 않으면 출석실적이 되어 “F”처리 된다.
- ⑦ 디렉티브 스터디는 정규등록의 마지막 학기에 한하여 신청하여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 학교사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.

제24조 (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) ① 수강과목의 취소,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만 가능하다.

- ② 필수과목, 재수강과목, 대체수강과목 및 디렉티브과목의 취소는 할 수 없다.
- ③ 수강과목의 변경, 취소는 학교홈페이지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여 변경, 취소한다.
- ④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⑤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자동으로 “F”처리 한다.

제25조 (성적예고 및 정정) ① 성적은 학칙 제22,23조에 의거하여 학과목 담당교수가 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.

- ② 담당교수가 성적보고 마감일까지 성적을 보고하면 성적이의 신청일까지 대학전산 (성적입력)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하며 위 기간이후 학생의 성적 정정이 발생할 경우는 담당교수의 시말서와 함께 교학과에서 수정 할 수 있다.
- ③ 성적의 평점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에서 끊어서 계산한다.
- ④ 선수과목(기초헬라어, 기초히브리어)의 성적은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.
- ⑤ “F”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평균에 계산한다.
- ⑥ 성적은 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전산입력 한다.
- ⑦ 중간시험 실시 후, 군입대 및 중한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능하거나 수강이 어려운 자로서 출석일수가 3/4이상 되는 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, 중간시험 성적을 해당학기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⑧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.
 1. 시험 중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학기 성적 전부.
 2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학기 성적 전부.
 3. 부정행위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.

제26조 (학점인정) ① 대학원에서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대학원 간에 학점교환 제를 실시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국신학대학협의회 대학원 학점교환 실시규정에 의한다.

- ② 대학원 학생 중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“B”이상의 동일 계열 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최대 2학기(15-18학점 인정), 박사과정은 최대 2학기(18학점 인정) 이내에서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4. 6.>
- ③ 신학대학원에서는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“B”이상의 신학 과목에 한하여 최대 36학점 인정, 2학기이내에서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0. 10.>
- ④ 신학대학원 학생 중 본교 학부(95학번까지)에서 신학(부전공포함)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는 “C⁰”이상의 신학 과목에 한하여 최대 36학점 인정, 2학기이

내에서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.(단,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)

- ⑤ 사회복지대학원에서는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"B"이상의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최대 9학점 인정, 1학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5., 2014. 10. 10.>
- ⑥ 상담대학원에서는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"B"이상의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최대 9학점 인정, 1학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상담대학원 Th.M. 과정 학생 중에서 본교 M.A.또는 M.Div.를 졸업한 자는 9학점인정, 1학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0. 10.>
- ⑦ 신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"B"이상의 동일계열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최대 2학기(15-18학점 인정), 박사과정은 최대 2학기(18학점 인정) 이내에서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4. 6.>
- ⑧ 설교대학원에서는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"B"이상의 신학 과목에 한하여 최대 15학점 인정, 2학기이내에서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4. 6.>

제 4 장 등 록, 휴 학, 복 학, 제 적

제27조 (등록) ① 등록은 입학등록, 학기등록, 재입학등록, 논문등록, 종합시험등록 및 연구생등록으로 구분한다.

②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전항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학생은 경리과에서 "납입고지서"를 교부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제28조 (휴학)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휴학 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각각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군입대, 출산·육아,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 2. 25.>

③ 군입대 휴학은 휴학원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군복무 확인서를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휴학원서는 등록 및 수강신청 만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등록자는 자동으로 제적처리 된다.

⑤ 군입대 및 질병의 사유 이외의 휴학은 중간시험 실시이전에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을 넘어 휴학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학기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.

⑥ 일반 휴학자가 휴학기간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될 경우에는 입영명령서를 지참하여 휴학사유 및 휴학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.

⑦ 논문학기(규정 외 학기) 중에는 휴학할 수 없다. (단, 질병 및 특별한 사유인 경우에는 휴학기간 내에서 허락할 수 있다.) <개정 2011. 2. 25.>

⑧ 질병 및 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은 출산전후 2년 이내로 한다. <신설 2011. 2. 25.>

⑨ 미등록 및 미복학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휴학기간 내에서 원장의 허락을 받아 직권으로 휴학처리한다. <신설 2011. 2. 25.>

제29조 (복학)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복학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하지 못할 때에는 휴학연장 청원을 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.

③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군입대 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징계가 해제된 자도 등록을 하기 위한 복학절차를 밟고 허락을 얻어야 한다.

제30조 (학사경고 및 징계) 대학원은 학칙 제16조 및 제37조에 의거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에게 학사경고 및 징계를 가한다.

① 다음의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장의 결재를 받아 학사경고를 한다.

1.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 성적이 2.20미만인 자.

2. 한 학기 1교과목이상이 "F"인 자(단, 신학대학원, 신학전문대학원은 2과목이상)

② 위 학사경고 대상자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이를 기재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을 명한다.

1. 재학 중 2회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.

2. 재학 중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.

제31조 (자퇴) 대학원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 (제적)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.

①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.

②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자

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.

④ 무기정학을 받고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징계해제처분을 받지 못한 자.

⑤ 삭제<2011. 2. 25.>

제 5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

제33조 (학적부 기재사항 변경)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성명
- ② 생년월일
- ③ 주민등록번호

제 6 장 제증명 발급

- 제34조 (제증명 발급)** ① 성적, 재학, 제적, 수료, 학위수여예정,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와 학생증의 발급은 학생서비스센터에서 한다. 병사에 관계되는 제증명은 학생처에서 발급한다.
- ② 위1의 증명서 외에 특별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발행할 수 있다.

부 칙(1)

- ① (시행일자) 학칙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종전 학칙시행세칙의 폐지) 종전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, 신학대학원, 목회대학원, 사회복지대학원, 임상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의 학칙시행세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- ③ (휴학연장특례) 학칙시행세칙 제27조 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는 통산하여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5학기 휴학을 2000년 2월까지 한 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- ④ 이 학칙시행세칙의 개정은 각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로 총장이 시행한다.<개정 2008. 10. 1.>

부 칙(2)

- ① (시행일자) 학칙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휴학연장특례) 학칙시행세칙 제27조 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는 통산하여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5학기 휴학을 2003년 2월까지 한 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(3)

- ① (시행일자)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- ① (시행일자) 학칙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- ① (시행일자)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제15조(이수학점), 제25조(학점인정) 5항은 2004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.
③ (시행일자) 제4조(입학자격) 1항은 2005학년도부터 적용 한다.
④ (시행일자) 제25조(학점인정) 3항은 2005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6)

- ① (시행일자)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2항은 200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7)

- ①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2항 3호는 2008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(8)

- ①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2항 2호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(9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
② (경과조치) 제4조(입학자격) 4항 2호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0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1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2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5항 2호의 '다'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3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2조 4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4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5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5항 1호 및 2호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6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4조(입학자격) 1항 2호의 '다', '라' 목, 3호의 '다', '라' 목과 제6조(입학전형) 1항 1호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7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3항 3호 및 제22조(학기당 취득학점) 4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적용한다.

부 칙(18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16조 ③항 2호 및 제22조 ③항과 단서조항은 사회복지대학원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②항 5호의 나.는 대학원 보육학과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1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2조 ④항, 제4조 ④항 및 제20조는 신학전문대학원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2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4조(입학자격) ①항 2호 “다” 및 ①항 3호 “다”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적용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③항 3호의 “나” 및 “라”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3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16조 3항은 상담대학원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4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③항 1호의 “가”와 “나” 목 및 제22조(학기당 취득학점)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제16조 ③항 1호의 “라”목은 재학생에게 소급적용한다.

부 칙(25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조(과정별 학과 및 전공) ③항 3호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, 제2조(과정별 학과 및 전공) ②항 4호, 제6조(입학전형) ③항 1호 및 제16조(이수학점) ②항 3호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6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4조(입학자격) ④항 2호의 “다” 및 제5조(입학지원서류) ④항 및 ⑤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7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8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①항 2호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9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4조(입학자격) ③항 2호의 “가”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④항 1호의 “마”, “바”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(30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조(과정별 학과 및 전공) ③항 3호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31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③항 1호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(32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4조(입학자격) ①항 1호 나.(6)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33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6조 (이수학점) ③항 3호의 “가”와 “마”목 및 제22조(학기당 취득학점)

④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34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5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①항 1호 “나”목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36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2조(과정별 학과 및 전공) ②항 2호 “바”목, 제4조(입학자격) ①항 1호 “가”, “나”목 (3)(5)(6), ③항 1호 “가”목 “ㄴ” (3), “나”목 “ㄱ” (1), “ㄴ” (5), ④항 1호 “다”목, 2호 “나”“다”목, ⑤항, 제5조(입학지원서류) ①항 1호 “라”“마”목, 2호 “라”목, ②항 3호, ③항 1호 “라”“바”“사”목, 2호 “다”목, ④항 4호 6호 7호, ⑤항 4호 5호, 제6조 ①항 1호 4호, ③항 1호 “가”“나”목, 제22조 ③항, 제26조 ②항 ③항 ⑤항 ⑥항 ⑦항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37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6조 ③항 3호 “가”목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38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4조(입학자격) ①항 1호 “나”목, (1)~(4), ②항 1호, ③항 1호 “나”목 “ㄴ” (5)(6)(7)(9)(10)(11), 제5조(입학지원서류) ①항 1호 “마”목, 2호 “라”목, 3호 “마”목, 제13조(수업연한) ⑦항 ⑩항, 제16조 ①항 1호 “가”목, 2호, ②항 1호 “가”목, 2호 “가”목, 3호 “가”목, 5호 “가”목, 6호, ③항 1호 “다”“라”목, ④항 1호 “가” “나”“다”“라”목, ⑤항, 제20조, 제22조 ①항 ②항 ⑤항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39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6조(이수학점) ①항 3호 “나”목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40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